

알아봅시다!

공정거래법

정보교환행위



시작하기



정보 교환 행위란?

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

개념

가격, 생산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

정보의 유형

1. 원가
2. 출고량, 재고량 또는 판매량
3. 거래조건 또는 대금·대가의 지급조건



정보 교환 행위란?



“

정보교환은 정보를 서로 '공유하는' 행위예요
구두, 우편, 전화 등 수단 뿐 아니라 **사업자단체*** 등
중간매개자를 거쳐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!

”

* 사업자단체 : 협회, 협의회 등

예시



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 운송구간, 원가정보 제공
→ 사업자단체가 정리 후 전체 구성원에 정보공유 ☆



사업자단체가 사업자들에게 운송구간, 원가정보 취합
→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당 정보 공유하지 않음 ☆

정보 교환 행위의 요건

01 합의의 성립

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**명시적 + 묵시적 의사의 합치**가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 성립

02 경쟁제한

① 독과점적 시장 ②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 ③ 비공개 정보 외 **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** 및 경쟁제한성 판단

03 효율성 증대 효과

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큼 효율성의 증대 효과가 높은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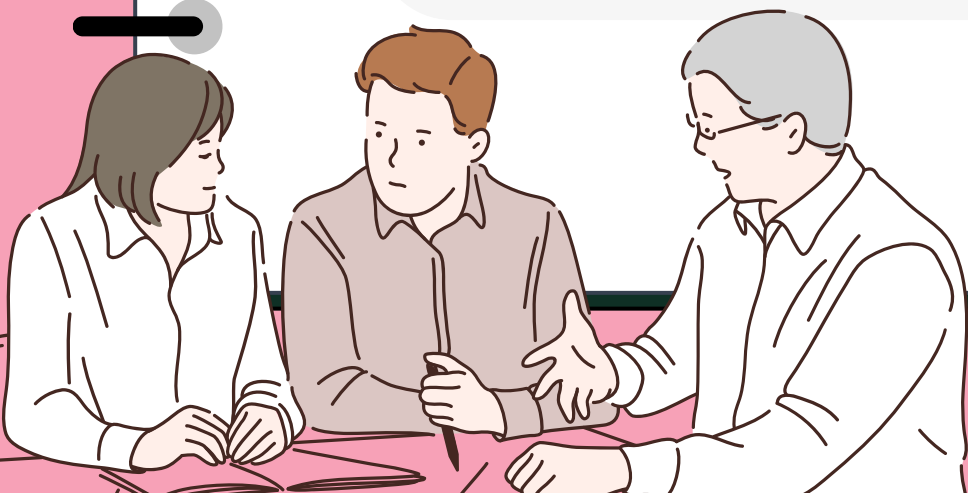
정보 교환의 합의 추정

01 외형상 일치

경쟁사 간 경쟁변수(가격 등)의 변동폭·시점이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외형상 일치가 인정 될 수 있음

02 필요한 정보의 교환

- ① 교환된 정보가 가격, 운송구간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
 - ②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정보 교환
 - ③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가 유사
- 등 정도에 따라 경쟁변수의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



유의사항

- ✓ 정보교환행위 그 자체로 담합이 성립하진 않지만, **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**될 수 있습니다.
- ✓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언급되는 문서 작성 시 **출처를 기록**해 놓아야 합니다.
- ✓ 경쟁사의 임직원과는 이메일, 전화, 사적모임 등 **어떤 수단으로든 경영정보를 교환해선 안됩니다.**
- ✓ 내부 보고문서 작성 시 **담합의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및 표현은 지양**하여야 합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방(주)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해 주세요